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38

발의연월일: 2020. 8. 13.

발 의 자: 우원식·송재호·김회재

인재근 • 이해식 • 박홍근

김경만 • 유동수 • 양정숙

박성준 · 권칠승 · 홍정민

이성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R&D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번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가 총 1.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 (55.3%)에서 현재까지 사업화 성과가 단 1원도 나지 않고 있음에도 R&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. 중기부는 R&D 관련 자체 규정인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을 통해 사업화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, 정작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 및기관 등과 연계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.

이에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

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,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&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(안 제25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3(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) 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 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,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,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5조의3(중소기업 기술개발 지
	원사업에 대한 평가) ① 중소
	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
	술개발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
	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
	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
	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
	<u> 여야 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중
	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
	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
	포함되어야 한다.
	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
	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
	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
	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
	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
	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소기업
	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거
	나 참여한 기관, 단체 또는 기
	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
	실히 응하여야 한다.
	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,

대상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.